

북한의 중재법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Characteristics and Suggestions of Arbitration Act in North Korea

최석범*
Seok-Beom Choi

〈목 차〉

- I. 서 론
- II. 북한 중재제도의 일반적 고찰
- III. 북한 중재법상 중재절차
- IV. 북한 중재법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 V. 결 론

주제어 : 북한, 중재법, 대외경제중재법, 중재제도, 국가중재제도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I. 서 론

우리나라의 중재법과 같이 북한에서도 1995년에 중재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북한의 중재법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중재제도에 입각하고 있다. 즉, 북한의 중재법상 국가중재제도는 일반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중재제도와는 아주 판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중재합의, 중재원의 선정 등 중재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한 자유민주주의 중재제도와는 달리 북한의 중재제도는 개인이 아닌 기관, 기업소, 단체라는 사회주의적 소유조직이 인민경제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그 시비를 가리는 국가재판활동일 뿐만 아니라 부차적으로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하여 체결된 계약을 준수하여 인민경제계획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행정활동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국가중재제도는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하여 계약상의 분쟁을 사법적 구조로 해결하고자 한다는 차원에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민사소송절차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기관, 사업소, 단체에 제재금을 부과하거나 개별적 일군에게 벌금을 부과하여 집행한다는 점에서는 형사재판적인 특성과 행정적인 특성을 함께 지니고 있는 북한 특유의 국가중재제도로 정착되고 있다.

북한의 대외개방의 속도가 진행되고 있고 남북한 개성공단사업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북한의 중재법에 근거한 국가중재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중재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로서는 김광록의 “북한의 국제상사중재제도에 관한 고찰”¹⁾이 있는데 북한의 중재환경, 북한의 중재제도, 대외경제중재법을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김광록의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에 관한 연구”²⁾가 있는데 북한의 국제중재환경의 변화,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을 분석하고 있다. 박정원의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에 관한 연구”³⁾에서는 북한의 중재제도뿐만 아니라 중국과 한국의 중재법을 비교법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박정원의 “북한의 대외경제중재제도에 관한 고찰”⁴⁾에서는 북한의 대외경제중재제도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김상호의 “북한의 상사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⁵⁾에서는 대외경제중재법의 제정과 주요내용, 북한 분쟁해결제도의 확대 등을 다루고 있다. 최석범의 “북한 대외경제중재법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⁶⁾에서는 북한 대외경제중재법의 제정배경, 주요내용, 그 문제점과 해결

1) 김광록, “북한의 국제상사중재제도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제14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pp.125-149.

2) 김광록,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17집, 한국법학회, 2004, pp.445-461.

3) 박정원,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0.

4) 박정원, “북한의 대외경제중재제도에 관한 고찰”, 「북한법연구」, 제4권, 북한법연구회, 2001, pp.59-88.

5) 김상호, “북한의 상사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국제무역연구」, 제8권 제2호, 국제무역학회 2002.10, pp.27-52.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정책자료로서 법원행정처의 “북한의 중재제도-국가중재재판제도를 중심으로”⁷⁾에서는 북한 국가중재제도의 연혁과 국가중재제도의 내용, 북한의 국제무역중재제도 등을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과 같이 북한 중재법에 대한 개론적인 내용이나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인 관계로 북한 중재법에 대한 논의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북한의 중재법에 근거한 북한의 국가중재제도에 대한 이해력을 제고하는데 그 연구목적이 있다.

II. 북한 중재제도의 일반적 고찰

1. 북한 용어에 대한 이해

북한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는 한국에서 사용되지 않는 용어도 있고 한국에서 다른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본 논문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남북한 용어에 대하여 비교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북한의 중재원회의 경우 도(직할시)중재기관이 내린 재결에 대해 의견이 제기된 경우 중앙중재기관의 중재인 3명이 참가하는 회의를 의미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중재판정부와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다.

<표 1> 남북한 중재관련 용어의 대비표

남측	북측
중재판정	재결(서)
중재인	중재원(재결원)
의장중재인	책임재결원
중재판정부	중재원회의
중재신청서	중재제기서
신청인	원고
피신청인	피고
정본	등본
중재인명부	재결원명단
법령	법

6) 최석범, “북한 대외경제중재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8권 제1호, 한국관세학회, 2007, pp.303-323.

7) 법원행정처, 「북한의 중재제도 -국가중재재판제도를 중심으로」, 통일사법정책자료 95-IV, 1995.

활동 보장	사업 보장
기피신청	거부신청
열거	지적
교부	제시
호상간	상호간
서명	수표
분쟁해결절차	사전심리
구성하다	내오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판정	다수가결의 방법으로 채택
서명	수표
문본	문건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	집행제도에 따라 집행을 보장

그리고 북한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 <표 2>와 같다. 정의하고 있는 내용은 사전적 정의도 있고, 사전에서 참조할 수 없는 단어의 경우 여러 문헌을 종합하여 정의하였다.

<표 2> 북한 용어에 대한 정의

북한용어	정의
기요	중요한 문서
공리단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
담보처분	재산을 소유자와 보관자가 마음대로 이용 또는 처분할 수 없도록 원래대로 보관하도록 하는 강제처분
국가중재재판 제도	개인이 아닌 기관, 기업소, 단체가 인민경제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그 시비를 가리는 국가재판활동이고 부차적으로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하여 체결된 계약을 준수하여 인민경제계획을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행정활동으로서 제도
계약중재원	북조선인민위원회 계약중재원규정에 따라 인민경제계획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처리하기 설립된 기관
계획적 계획제도	인민경제계획에 따라 기관, 기업소, 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제도
맞중재	쌍방이 신청하는 중재

2. 북한 중재제도의 변천

(1) 계약중재원의 설치

북한은 구소련이 계획경제체제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던 국가중재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여 1948년 2월 29일에 처음으로 국가중재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였다. 즉, “국가경제기관, 국영기업소 및 공리단체 호상간의 계약제도와 결제제도 확립에 관한 결정”과 “북조선인민위원회 계약중재원규정”이 북조선인민위원회의 결정 제120호로 제정되었다. 이 법령의 도입으로 계획적 계약제도가 창설되었고 이 제도의 정확한 실시를 법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국가중재제도가 도입되어 해당 인민위원회 내에 ‘계약중재원’이 설치되었다. 이러한 계약중재원은 북조선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는 ‘북조선 계약중재원’ 그리고 북조선 계약중재원의 지도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해당 도민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는 ‘도계약중재원’으로 구분되었다.⁸⁾

이러한 계약중재원규정에서는 국가중재기관과 재판관할과의 상호관계를 명확하게 하였는데 국가중재기관의 심리·해결 범위를 경제기관, 국영기업소 및 공리단체 상호간의 계약체결이나 그 이행에 관련된 문제로 한정하였다.

초기부터 북한의 중재제도는 중재원 1인의 비공개 심리나 당사자의 참석여부에 관계없이 심리가 진행되어 기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심리되고 심급제도를 설정하지 않고 재결에 대한 감독절차만을 두는 등 현재의 중재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틀을 갖추고 있었지만 중재기관의 역할범위를 제한하였기 때문에 개인기업체나 개인과의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통상 재판소가 해결하게 되었다.

(2) 국가중재원의 설치

북한은 1949년과 1950년 사이의 제1차 2개년 인민경제계획의 본격적인 수행에 따라 분쟁이 증가하였고 6.25전쟁 중 물자자원의 원활한 보급을 통한 국가적 통제의 강화 등의 이유로 중재기관의 권한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1952년 11월 “국가중재원에 관한 규정”을 채택하였는데 이 규정에 따라 국가중재기관이 ‘국가중재원’과 ‘도중재원’으로 나누었다.⁹⁾

국가중재원은 내각의 직속으로 두고 도중재원은 해당 도민위원회로부터 분리하여 국가중재원에만 예속되는 독자적인 도급기관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중재기관의 권한도 강화되었는데 국가중재원장은 계약제도실시와 관련한 규정해석 및 지시를 하급 중재기관뿐만 아니라 경제기관에까지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위법사실의 시정대책을

8) 전계서, pp.42-43.

9) 리황, 「중재법학(법학부용)」,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1, p.34.

상급기관에 통보하거나 검찰기관에 형사적인 책임을 추궁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도중재원은 국가중재원의 관할이더라도 사실확인의 신속성, 증거수집의 편의상 필요한 경우 도중재원이 관할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3) 국가중재기관제도의 도입

6.25전쟁의 종료 후 황폐해진 경제를 복구하는 방안으로 추진된 경제부흥 3개년 계획과 제1차 5개년 계획에 의하여 인민경제계획에 포함되는 계약의 범위가 확대되어 국가중재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954년 12월과 1955년에 각각 “국가중재기관에 관한 규정”과 “국가중재기관의 중재사건 심리 및 해결규정”을 마련하여 국가의 중앙집권적 계획적 지도를 확실히 보장하였다. 특히 전후 경제를 복구·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분쟁이 빈발하고 그 처리가 민사사건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중재기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중재기관은 내각의 직속기관인 동시에 사법성의 장인 사법상의 지도도 받게 되었다. 경제기관들에 대한 중재기관의 체계적인 조사와 중재원의 발의에 의한 사건의 제기, 개별적 일군에 대한 벌금의 부과 등 권리가 강화되었다.

“국가중재기관의 중재사건 심리 및 해결규정”的 도입은 북한의 국가중재제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국가중재절차의 전과정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 반송제도의 도입, 사건기각 사유의 명확화, 맞중재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1956년 11월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소속 무역중재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어 무역중재위원회가 도입되었다.¹⁰⁾ 그리고 1958년 5월에는 상업성내의 중재기구를 창설하여 상업성 하의 경제기관들간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상업성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성중재제도를 도입하였다.¹¹⁾

(4) 국가중재제도의 정착

1960년대 이후부터 북한에서는 구체적인 통제와 규율의 강화를 통한 독자적인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자 하는 노력이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중재의 경우에 1960년 12월 “국가중재에 관한 규정”이 채택되었다. 계획의 일원화를 법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국가중재기관의 사업체계가 개편되었고 계획의 세부화방침에 따라 중재기관이 취급·처리해야 할 사건관할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 규정에서는 기관, 기업소 그리고 개별적 일군에 대한 벌금부과의 법적 근거와 제기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였고 계약체결에 대한 지도를 국가중재기관의 주요한 임무로 규범화하였다. 또한 기존의 성중재제도를 상업성이 아닌 다른 경제성에서도 도입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가 성중재에서 상급기관을 징계할 수 없는 문제, 국가중재와 그리고 성중재

10) 박정원,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 분석”, 「북한대외경제교류법령의 주요 논점」, 통일사법정책자료 2001-1, 2001, p.193.

11) 리황, 전계서, p.37.

상호간의 조직적 연계의 부족으로 인하여 중재부의 통일성을 깨뜨린다는 단점 등으로 인하여 1966년 8월 성중재제도는 폐지되었고 그 기능이 국가중재로 통합되었다.

국가중재관련규정의 개선과 강화의 필요성에 따라 1971년 9월 “중재사업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계획수행에 대한 국가중재기관의 통제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건처리에서의 그 권한을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1972년 12월 27일에는 사회주의헌법을 개정·채택하였으며, 중재기관의 통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1980년경 “국가중재부에 관한 규정”과 “중재재판규정”을 채택하여 중재기구를 중앙인민위원회에 직속하는 독립적인 국가중재부로 격상시켰다.

(5) 중재제도의 체계화

북한의 기관이나 기업소 및 단체간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5년에 새롭게 도입된 것이 바로 중재법인데 중재에 관한 통일법적인 성격을 지닌다.¹²⁾ 그러나 개인 특히 대외중재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1999년 7월 대외경제중재법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기존의 대외무역관련법을 정비한 결과이고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 북한 중재제도의 성격

(1) 국가중재제도

북한에서의 중재제도는 국가중재재판제도 또는 국가중재제도라는 기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북한의 중재제도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중재개념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즉, 북한의 중재제도는 중재합의, 중재원의 선정 등 중재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중재가 진행되는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의 중재제도와는 판이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¹³⁾

기본적으로 중재는 개인이 아닌 경제기관·기업소·단체라고 하는 사회주의적 소유조직이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해 시비를 가리는 국가재판활동을 의미한다. 부차적으로 사회주의적 소유조직이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하여 체결된 계약을 준수하고 인민경제계획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행정활동을 의미한다.¹⁴⁾

12) 김광록, “북한의 국제상사중재제도에 관한 고찰”, 전계서.

13) 박정원, 「북한의 대외중재중재법에 관한 고찰」, 전계서, pp.13-14.

14) 사회안전부출판사, 「민사법사전」, 1997, p.532.

(2) 형사재판적 특성과 행정적인 특성의 혼재

북한의 국가중재제도는 인민계획경제에 기초한 계약상의 분쟁을 사법적 구조로 해결하려는 것을 그 본질로 한다는 점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민사소송절차와 유사하다. 그렇지만 별금을 부과하거나 개별적 일군을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나 검찰기관에 넘기거나 검열·감독업무, 제기업무 등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는 형사재판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 독특한 분쟁해결 및 인민계획경제수행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북한 중재법상의 중재제도의 성격이다.

(3) 계획 및 계획규율 위반현상에 대한 엄격한 법적 통제수단으로서의 성격

북한의 국가중재는 “경제기관, 기업소들 사이에 제기되는 계획 및 계약규율 위반사건을 심리해결하는 국가의 권력적 활동”으로 정의되고 있다.¹⁵⁾ 인민경제계획의 이행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경제기관, 기업소들의 계획과정에서 제기되는 계약 및 계약규율위반현상에 대하여 엄격한 법적 통제를 시행하여야만 인민경제계획에서 예견된 모든 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중재는 인민의 경제활동을 장악함으로써 개인의 사상까지 당이 의도하는 바대로 개조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¹⁶⁾

(4) 대상외로서 민사분쟁

북한의 국가중재제도가 모든 생산수단의 국가소유, 중앙집권적 계획과 통제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본성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들간에 경제체제의 본성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민사분쟁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¹⁷⁾

(5) 당사자와 대상의 제한성

북한의 중재제도는 민사재판처럼 중재재판에 있어서도 원고와 피고가 사건당사자로서 동등한 지위를 갖고 주장과 증명의 부담을 지게 되지만 중재재판의 당사자는 경제기관·기업소·단체만이 될 수 있고 그 재판대상도 인민계획수립과정에서 제기되는 계약과 관련된 분쟁문제에 한정된다.

15)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법학사전」, 사회과학출판사, 1971, pp.71-72.

16) 리황, 전계서, p.14.

17) 박정원, 「북한의 대외중재중재법에 관한 고찰」, 전계서, p.23.

III. 북한 중재법상 중재절차

1. 중재제기

(1) 가능한 중재제기 기관

첫째,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실행 및 계약이행과정에 자기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중재를 제기하여야 한다.¹⁸⁾ 둘째, 중재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계획 및 계약 규률 위반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직접 중재를 제기할 수 있는데 중재제기는 중재원의 결정으로 한다.¹⁹⁾ 셋째, 감독통제기관은 중재절차로 해결하여야 할 계획 및 계약 규률위반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²⁰⁾

(2) 중재제기서

1) 중재제기서의 기재내용과 기타요건

중재를 제기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재기관에 중재제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중재제기서에는 원고, 피고의 이름과 소재지, 청구내용과 그 근거로 되는 사실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²¹⁾ 그리고 중재제기서에는 ①청구의 근거로 되는 문건, ②분쟁사건에 대하여서는 피고에게 청구하였던 문건의 등본과 피고의 답변서, ③이밖에 사건해결에 의의가 있는 문건을 첨부한다.²²⁾ 그리고 이러한 중재제기서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도장을 찍으며 기관, 기업소, 단체 책임자의 이름을 쓰고 수표하거나 도장을 찍는다.²³⁾

2) 제기일자와 중재관계문서의 송부방법

중재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낸 중재제기서를 중재기관이 접수한 날에 제기된 것으로 인정한다. 기요 또는 우편으로 중재제기서를 보냈을 경우에는 그것을 보낸 날에 제기된 것으로 인정한다. 중재제기서밖의 중재관계문서를 기요 또는 우편으로 보낸 경우에도 중재제기서를 보냈을 때와 같이 인정한다.²⁴⁾ 중재제기서를 비롯한 모든 중재관계문서는 기요로 보내며 기요로 보낼 수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가 직접 중재기관에 내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²⁵⁾

18) 북한 중재법 제26조

19) 북한 중재법 제30조

20) 북한 중재법 제31조

21) 북한 중재법 제27조

22) 북한 중재법 제28조

23) 북한 중재법 제29조

24) 북한 중재법 제32조

25) 북한 중재법 제33조

3) 중재제기서의 수정과 중재제기불가사유

중재기관은 중재제기서가 이 법 제27조, 제28조, 제29조의 요구를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필요한 기간을 정해주어 고치게 하며 그 기간에 고치지 않을 경우에는 돌려보낸다. 이 경우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²⁶⁾ 재결이 내려졌거나 판결, 판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서는 중재를 제기할 수 없다.²⁷⁾

2. 중재준비

(1) 중재준비 기관

중재사건을 검토하고 신속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중재준비를 하는데 중재준비는 사건을 맡은 중재원이 한다.²⁸⁾

중재원은 중재제기서를 검토하고 첫째, 당사자에게 새로운 증거를 더 내게 한다. 둘째, 새로운 당사자를 인입하거나 자격없는 당사자를 자격있는 당사자로 바꾼다. 셋째, 사건을 합치거나 가르는 문제를 결정한다.²⁹⁾

(2) 현지조사와 자료요청

중재원은 사건해결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³⁰⁾ 중재원은 중재준비를 위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에 필요한 문건이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일군으로부터 조서를 받을 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해당 일군은 중재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³¹⁾

(3) 담보처분

중재원은 중재준비과정에 비법적으로 거래된 자금, 물자를 발견하였을 경우 담보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처분결정서를 해당 일군에게 보이고 2명의 입회인을 세운다.³²⁾

(4) 감정

중재원은 중재사건을 밝히는데 전문지식이 필요할 경우 해당 감정기관 또는 감정인에게 감정을 맡길 수 있으며 감정을 맡기는 결정서에는 감정 대상과 내용, 기간을 밝힌다.³³⁾

26) 북한 중재법 제34조

27) 북한 중재법 제35조

28) 북한 중재법 제36조

29) 북한 중재법 제37조

30) 북한 중재법 제38조

31) 북한 중재법 제39조

32) 북한 중재법 제40조

감정인은 감정에 도움이 될 자료를 중재기관에 요구할 수 있으며 중재원의 승인밑에 필요한 내용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일군에게 물어볼 수 있다.³⁴⁾ 감정인은 정해준 기간에 감정을 하고 감정서를 중재기관에 내야 하며 중재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중재심리에 참가하여야 한다.³⁵⁾

(5) 중재준비 중지와 계속

중재준비를 중지하는 경우로서 첫째, 당사자인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해산되었을 경우, 둘째, 행정적 절차에 따라 심의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중재사건을 처리할 수 없을 경우, 셋째, 중재준비를 계속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이다.³⁶⁾

중재원은 이 법 제44조 1호에 의하여 당사자의 권리, 의무가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어갔거나 2호, 3호의 사유가 없어졌을 경우 중재준비를 계속하여야 한다.³⁷⁾

(6) 중재심리에 넘기는 결정서

중재원은 중재준비가 끝나면 결정으로 사건을 중재심리에 넘기는데 사건을 중재심리에 넘기는 결정서에는 사건명과 원고, 피고의 이름, 원고, 피고의 주장사실, 중재원이 조사확증한 사실, 중재심리 날짜와 장소, 중재심리에 부를 증인, 감정인 같은 것을 밝힌다.³⁸⁾

(7) 중재사건의 기각

중재사건을 기각하는 경우로서 첫째, 당사자인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해산되었으나 그의 권리, 의무를 다른 기관, 단체에 넘길 수 없을 경우 둘째, 당사자로 될 수 없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당사자로 되었으나 그를 자격있는 당사자로 바꿀 수 없을 경우 셋째, 이 법 제44조 2호, 3호의 사유로 중재준비를 중지하였으나 중지한 때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그 사유가 없어지지 않을 경우 넷째, 중재심리를 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이다.³⁹⁾

(8) 중재심리 일자와 장소의 통지

중재기관은 중재심리를 시작하기 7일전에 검사, 당사자, 증인, 감정인에게 중재심리 날짜와 장소를 알려주어야 하며 중재심리 날짜와 장소를 알리는 것을 비롯하여 모든 통지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한다.⁴⁰⁾

33) 북한 중재법 제41조

34) 북한 중재법 제42조

35) 북한 중재법 제43조

36) 북한 중재법 제44조

37) 북한 중재법 제45조

38) 북한 중재법 제46조

39) 북한 중재법 제47조

40) 북한 중재법 제48조

(9) 중재준비과정상 제기된 수속상 문제 해결

중재준비과정에 제기되는 수속상 문제의 해결은 중재원의 결정으로 한다. 중재원의 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해당 중재원이 속한 중재기관에 제기할 수 있다. 해당 중재기관은 의견을 제기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⁴¹⁾

(10) 중재준비단계에서의 행위조서

중재원은 중재준비단계에서 한 행위에 대하여 조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조서에는 중재원의 이름을 쓰고 수표하거나 도장을 찍으며 고친 데는 도장을 찍는다. 입회인이 참가하였을 경우에는 조서에 입회인의 도장 또는 지장을 찍는다.⁴²⁾

3. 중재심리

(1) 중재판정부와 참가자

중재심리는 중재원 1명이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중재원 3명으로 구성된 중재원회의에서 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중재원이 중재심리를 지휘한다. 중재심리에는 서기를 참가시킬 수 있다.⁴³⁾

중재심리에는 당사자인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자가 참가하고 대표자가 참가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인이 참가할 수 있다.⁴⁴⁾ 중재당사자가 중재심리에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첫째, 원고가 참가하지 않아 사건을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건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원고의 참가없이도 피고의 법위반 사실을 확증하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경우에는 중재심리를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에게 물린 제재금을 국고에 넣는다. 둘째, 피고가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미 조사한 자료에 근거하여 중재심리를 하고 해당한 재결을 내린다.⁴⁵⁾

(2) 중재심리절차

1) 중재심리 시작 통지

중재원은 중재심리를 시작한다는 것을 알린 다음 당사자에게 새로운 증거를 내거나 그 밖의 신청이 없는가를 묻고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해결한다.⁴⁶⁾ 중재원은 새로운 증거를 수집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중재심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결정으로 중재심

41) 북한 중재법 제49조

42) 북한 중재법 제50조

43) 북한 중재법 제51조

44) 북한 중재법 제52조

45) 북한 중재법 제53조

46) 북한 중재법 제54조